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8조제1호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 유형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태료<br>(단위: 만원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공시 여부         | 공시기한 준수 여부       |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가. 공시하지 않은 경우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|
| 나. 공시한 경우     | 1)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| 가)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| 100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나)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서 가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2) 공시기한을 넘긴      | 가)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|

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| 경우 | 공시하거나 거짓으로<br>공시한 경우가 아닌 경<br>우(주요내용을 누락하<br>여 공시하거나 거짓으<br>로 공시한 사항을 과태<br>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<br>송일 전날까지 보완한<br>경우를 포함한다) |     |
|  |    | 나) 주요내용을 누락하여<br>공시하거나 거짓으로<br>공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0 |